

# 거창군계획조례안

의안 번호	2003~25
----------	---------

제출연월일	2003. 5
제출자	거창군수

## □ 제안이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군전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조례 미제정으로 인한 군민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는 등 국토이용체계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공연장, 관람장, 노래방 등 소음발생으로 주거환경의 훼손 우려시설은 불허함 (안 별표3)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구역별로 12층이하, 7층이하로 층수를 세분할 수 있게함 (안 별표4)
-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 비율을 종전 90% → 70%로 낮춤 (안 별표8내지9)
- 녹지지역내 건축물의 층수를 보전녹지는 2층이하, 생산녹지는 3층이하, 자연녹지는 3층이하로 제한함 (안 별표14내지16)
- 생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주유소와 석유 판매소시설을 제한함 (안 별표15및18)
-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농가주택, 축사, 마을회관 등)의 건폐율은 종전 40%에서 50%로 완화하여 농민불편을 해소함 (안 제59조)
- 종전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건폐율은 20~40%로, 층수는 보전관리는 2층이하, 생산관리는 3층이하, 계획관리지역은 4층이하로 하여 녹지지역 수준으로 제한함으로 난개발 방지를 하고자 함 (안 별표17내지19)
- 관리지역 세분 전까지는 건축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입지 등 조건에 적합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업(3층 이하)을 건축 가능하게 함 (안 별표23)

- 장기미집행 근계획시설내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2층이하로서 단독주택인 경우 연면적 200㎡이하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층이하, 연면적 500㎡이하로 함 (안 제14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함 (안 제20조)
- 개발행위 중 면적이 1만㎡ 이상 또는 경사도 20%이상 등인 토지의 개발행위와 5천㎡이상인 토석채취, 토지면적 5천㎡이상에 물건을 쌓아놓는 개발행위는 근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함 (안 제28조)
- 용도지역·지구·구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함.  
(안 제55조 내지 제63조)
- 도심계획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근계획 위원회의 구성기준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4조 내지 제74조)
- 거창군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함 (안 부칙 제2조)

□ 제정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 도시계획조례 표준안 [경상남도 도시 58214-11665(2002. 9. 16호)]

# 거창군계획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2장 군기본계획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자문을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당해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 안에서 읍·면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⑥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장 군관리계획

### 제1절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와 설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케이블텔레비전,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로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군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제

5호·제7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10분의 2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5. 군관리계획 결정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7.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 제2절 군계획시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거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②군계획시설 중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군계획시설의 관리는 동시설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에 의한다.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 법정한도는 3층, 면적제한 없음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법정한도는 3층, 면적제한 없음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단순 공작물로서 높이제한은 없음

###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첩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첩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4. 토석채취**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라. 토지의 일부가 근계확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 각각 3만㎡ 미만으로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1. 보전관리지역 : 도시지역내 보전녹지지역 적용
2. 생산관리지역 : 도시지역내 생산녹지지역 적용
3. 계획관리지역
  - 가. 공업지역내 최대규모 3만제곱미터 및 도시개발법상의 공업지역 최소규모 3만 제곱미터 적용
  - 나. 2중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소면적 3만제곱미터 적용(령44조 1항 3호)
4. 농림지역 : 농지법상의 농지전용가능면적의 최대한도는 3만제곱미터이나 생산녹지 지역과의 형평성을 판단하여 1만제곱미터 적용(령49조 3항 5호)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2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퍼센트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 회의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의 최고 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3. 군수가 별도고시하는 지역별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I 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II 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 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 가목 (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

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도로 가지권의 옹벽·석축의 높이(노출부분)는 3m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 등으로 가려진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2만제곱미터 미만
  - 나. 공업지역 : 면적 4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퍼센트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으로 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 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되, 당해 지역의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

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 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관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

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②군수가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 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한다.

③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제46조(건축물의 형태 등 제한)**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 전자유희기장, 장의사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다목(회의장 및 공회당은 제외한다), 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차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교도소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갇셈·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주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별표24와 같다.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과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3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과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 또는 상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위락지구
-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           |
|-------------------------------|-----------|
|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 | 법령상 50%이하 |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 | 법령상 50%이하 |
|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 법령상 60%이하 |
|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 법령상 60%이하 |
|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 법령상 50%이하 |
|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 법령상 70%이하 |
|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 법령상 90%이하 |
|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 법령상 80%이하 |
|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 법령상 70%이하 |
|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 법령상 80%이하 |
|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 법령상 70%이하 |
|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 법령상 70%이하 |
|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 법령상 70%이하 |
|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 법령상 20%이하 |
|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 법령상 20%이하 |
|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 법령상 20%이하 |
|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 법령상 20%이하 |
|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 법령상 20%이하 |
|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 법령상 40%이하 |
|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 법령상 20%이하 |
|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 법령상 20%이하 |

**제56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 법령상 60%이하(현조례 40%)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 법령상 40%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50퍼센트 이하 ----- 법령상 60%이하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 법령상 60%이하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70퍼센트 이하 ----- 법령상 80%이하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 법령상 40%이상의 범위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 법령상 80%이상 90%이하의 범위로 규정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법령상 60%이하(중전 40%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 법령상 100%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 법령상 150%이하⇒ 상동택지 120%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 법령상 200%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 법령상 250%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 법령상 300%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 법령상 500%(현행조례 400%)이하  
⇒ 상동택지 기준(500%)으로 조정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 법령상 1,500%이하

-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 법령상 1,300%이하
-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 법령상 900%이하
-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 법령상 1,100%이하
-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 법령상 300%이하
-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 법령상 350%이하
-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 법령상 400%이하
-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 법령상 80%이하
-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 법령상 100%이하
-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 법령상 100%이하
-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 법령상 80%이하
-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 법령상 80%이하
-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 법령상 100%이하
-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 법령상 80%이하
-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 법령상 80%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근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근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 법령상 100%이하
-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 법령상 80%이하
-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법령상 100%이하
-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공업지역이 아닌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 법령상 150%이하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근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법령상 120%이하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법령상 120%이하

**제63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times (\text{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장 군계획위원회

**제64조(기능)** 거창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군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8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 ②간사는 균계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직무 이행상 취득한 균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제6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 할 수 없다.

**제7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7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76조(과태료의 징수)**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내 건축제한은 별표4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 수준

**제5조(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의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및 층수제한, 기타 상세계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규정에 의한다.

**제6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은 이 조례의 범위안에서 당해 개발계획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다만,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보는 기 수립된 취약지구개발계획의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은 별표 24의 표를 적용하고, 그 외 개발계획에서 건폐율·용적률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창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3조,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 건축조례제33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35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국토계획법과 중복되어 삭제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 부칙 제2조에서 폐지한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마목의 종교집회장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6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사목, 아목, 차목, 타목과 옥외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 및 바목의 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12미터 이상의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매시장·상점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동호 가목의 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다목, 라목, 바목, 사목 및 학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동호 가목의 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중 동호 나목의 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형 공장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및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

####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7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와 옥외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집회장·전시장, 동·식물원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장례식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동호 다목, 마목, 자목 및 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세워진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중 동호 나목의 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별표3 제11호의 공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을 제외한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감화원·촬영소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와 옥외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당해 용도에 사

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집회장·전시장, 동·식물원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게임제공업소(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별표 3 제11호의 공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감화원·촬영소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별표 3 제11호 가목 내지 바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및 차고(주기장은 제외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과 나목중 인공수정센터·관리사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감화원·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초·중·고등학교 및 자연권수련시설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별표 3 제11호 가목 내지 바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 종전조례에서는 단독주택이 있었으나 금번 조례준칙에 따라 삭제함

###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는 별표 3 제11호가목 내지 바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바목, 아목(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세차장·검사장·매매장·운전학원·정비학원
1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1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 종전조례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은 개정조례준칙에 따라 제척함

###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7이하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바목, 아목(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세차장, 차고(주기장은 제외한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동호 라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동호 사목 및 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도서관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마목, 바목, 아목(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동호 라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 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학원(기술계 학원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 군사시설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연구소 및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아목의 시설

####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라목, 사목 및 아목의 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아목의 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어가 주택과 기존주택의 기능회복을 위한 증·개축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것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라목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사목 내지 자목과 학교(초·중·고등학교에 한한다),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액화가스판매소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동·식물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6호 가목 내지 마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유독물 보관·저장시설과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마목, 사목 및 아목의 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1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바목, 사목, 아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3호의 공장(동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7호 가목 내지 라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액화가스판매소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제3호 중 휴게음식점과 제4호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1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일반음식점의 경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내지 바목, 아목, 자목, 카목, 타목(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다목,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군수가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별표 15 제7호의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 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유독물 보관·저장시설과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마목, 사목 및 아목의 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1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휴게소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을 건축하는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바목,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및 자연권수련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군사시설·발전소 및 통신용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제3호 내지 제7호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농·어가주택을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등학교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 및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등학교 및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부칙 제13조제1항관련)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3호 중 휴게음식점, 4호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8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1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다목,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 별표 18 제5호 및 별표 19 제9호의 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휴게소

**【별표 24】 주거개발진흥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본 조례시행이전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도구역 구 분	주거용도	상업용도	공업용도	녹지용도
허용건축물	별표 3의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의 준거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의 준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의 자연녹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 제한	3층이하	4층이하	3층이하	3층이하
건 폐 율	60퍼센트이하	60퍼센트이하	70퍼센트이하	20퍼센트이하
용 적 륜	150퍼센트이하	200퍼센트이하	150퍼센트이하	80퍼센트이하